



한국제품안전협회

수신자 한국쌍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경 유) 이연동 부장

제 목 불법가구 유통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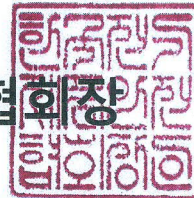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의거 불법·불량제품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가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KC마크 등)를 표시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자들이 KC마크 등이 없는 불법가구를 판매하고 있음에 따라 동법을 개정하여 금년 7. 26일부터는 KC마크 등이 없는 불법가구를 판매하는 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귀 회원사가 불법제품을 판매업자에게 제공하여 판매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장



팀장 박종수

본부장 백용선

협조

시행 안전 2012 - 제294호(2012.05.21)

접수

우 152-84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12, 마리오타워 310호

/ <http://www.ksafety.kr>

전화 02-890-8300

팩스 02-890-8309(6999)

/ pjs@ksafety.kr